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 '전공의 초음파 검사 참여'를 대체하는 내과전공의 초음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정 기준)

1. 교육 시행 전 본 학회에서 사전 승인된 교육프로그램만 인정된다.
 - 1)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프로그램 평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인증학회 및 수련병원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 별지 제1호 (연수교육 세부계획서)를 교육 실시 20일 전에 제출하고, 본 학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교육의 평점 승인은 대한내과학회 기타 운영 세칙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정한다.
 - 2) 승인된 교육 계획을 변경할 때는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한 전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승인된 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심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갑상선, 근골격 등의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원내 혹은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경우 대체하여 인정한다.
3. 초음파 검사 참여를 대체하는 내과전공의 초음파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초음파 검사 교육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전공의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교육프로그램이 3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경우 교육 횟수 1회, 17건으로 인정하며 1회 교육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한 교육 건수 추가 인정은 없다.
(예: 초음파 검사 참여 33건 및 초음파 검사 교육프로그램 1회 수료를 하는 경우 총 50건 참여로 인정)
 - 3) 다른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에 연속 참여한 경우는 각각 합산하여 인정한다.
(예: 복부 + 갑상선, 복부 입문 + 복부 초급 1)
 - 4) 교육프로그램이 3시간미만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경우 실제 교육시간에 따라 분할 인정한다.
단, 최소 1시간 30분 이상 교육만 인정한다.
(예: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 hands on course 1.5시간 - 9건 교육 인정)
 - 5) 동일한 초음파 검사 교육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다양한 수준별/장기별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한다.
 - 6) 2019년 3월부터 각 학회 전공의 초음파교육 프로그램은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이가 지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복부, 갑상선, 근골격은 영상의학과 전문이가 지도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4. 인증학회 및 수련병원은 교육 실시 후 반드시 4주(28일) 이내에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온라인 초음파교육 프로그램 및 점수 관리)

1. 온라인 초음파교육 참석 대상은 내과전공의로 한다.
2. 온라인 초음파교육 실시기관은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인증학회로 하고,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이가 교육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온라인 초음파교육은 실시간 화상 강의와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으로 참석 확인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 실시간 화상 강의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 또는 "각 세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시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2)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각 강의를 해당 교육일 내에 이수(시작, 종료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3) 동일 시간에 복수의 온라인 초음파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온라인 초음파교육 프로그램 점수는 1시간당 5건으로 인정한다. 1회 교육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한 교육 건수 추가 인정은 없다.
5. 온라인 연수교육은 한시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까지 인정하되, 예측 불가능한 심각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학회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을 인정할 수 있다.

제 4 조 (부칙)

1. 본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